

의안번호	2213805
의 퇴 인	이수진 의원
회 답 일	2025. 11. 19.
추 계 번호	25C5767

돌봄기본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42억 1,100만원
(연평균 28억 4,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13조)	95	-	-	-	-	95	19
돌봄 실태조사 실시(안 제17조)	270	-	-	270	-	540	108
돌봄지표 개발 및 지수 조사 실시 (안 제18조)	30	70	70	70	70	310	62
돌봄위원회 및 사무기구 설치·운영 (안 제19조·제21조)	2,622	2,626	2,629	2,633	2,636	13,146	2,629
돌봄의 날(안 제30조)	24	24	24	24	24	120	24
추가재정소요	3,041	2,720	2,723	2,997	2,730	14,211	2,842

주: 합계는 단수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 (돌봄정책 기본계획)	돌봄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14조 (돌봄정책 지역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돌봄정책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3항) 국가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돌봄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7조(실태조사)	돌봄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19조에 따른 돌봄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18조 (국가돌봄지수 등)	(제1항) 돌봄청장은 국가의 돌봄권 보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돌봄의 수요·공급 상황, 돌봄의 공공성 실현 정도, 돌봄노동자의 근무환경 및 무급돌봄의 제공실태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함 (제2항)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돌봄지표를 이용하여 돌봄권 보장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함 (제3항)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돌봄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돌봄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돌봄권 보장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19조 (돌봄위원회의 설치·운영)	돌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돌봄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7	안 제21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둠	의무규정
8	안 제23조 (돌봄기금의 설치)	국가는 돌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함	의무규정
9	안 제26조 (돌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돌봄청장은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공급, 돌봄인력·돌봄제공기관·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10	안 제27조 (돌봄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11	안 제28조 (조사 및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그 변화에 대응하는 돌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12	안 제30조 (돌봄의 날)	국가는 돌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며, 돌봄의 날이 속한 1주간을 돌봄 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31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공급 및 돌봄인력 양성체계의 국제수준으로의 발전 등을 위하여 돌봄과 관련한 국제기구·국제회의 참여 및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4	안 제32조 (돌봄정책 활성화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돌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제1항) 의무규정 (제5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3조 (돌봄정책 기본계획)	○	○ 여성가족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안 제14조 (돌봄정책 지역계획)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 각 기관의 기본경비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
4	안 제17조(실태조사)	○	○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5	안 제18조 (국가돌봄지수 등)	○	○ 여성가족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6	안 제19조 (돌봄위원회의 설치·운영)	○	○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7	안 제21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	○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8	안 제23조 (돌봄기금의 설치)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9	안 제26조 (돌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	
10	안 제27조 (돌봄인력의 양성 등)	×	
11	안 제28조 (조사 및 연구)	×	
12	안 제30조 (돌봄의 날)	○	○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3	안 제31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4	안 제32조 (돌봄정책 활성화 지원)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23조~제28조, 제31조~제32조에 관하여는 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계획 수립¹⁾(안 제14조), 돌봄기금 설치(안 제23
조), 돌봄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안 제26조), 돌봄인력 양성(안 제27조), 관련
조사 및 연구(안 제28조), 국제교류 활성화(안 제31조), 돌봄정책 활성화 지
원(안 제32조) 등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
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지원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
업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안 제13조·제17조~제21조·제30조)에 대해서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1)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역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역별 소요 비
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일례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지역별로 2천만원에서 8천만원 범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13조)

- 제정안에 따라 돌봄청장이 5년 주기로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가 2021년 수행한 “돌봄안전망 혁신·통합의 비전과 전략 연구” 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보건복지부는 돌봄안전망 실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1년 “돌봄안전망 혁신·통합의 비전과 전략 연구” 용역(9,250만원 소요)을 실시함
 - 본 추계에서는 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돌봄안전망 혁신·통합의 비전과 전략 연구” 용역 사례와 유사한 9,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9,500만원으로 추계

[표 2] 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13조)	95	-	-	-	-	95	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17조)

- 제정안에 따라 돌봄청장이 3년 주기로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2023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23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연구용역(2억 6,800만원 소요)을 실시
- 본 추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사 연구용역 사례의 소요재정을 참고하여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에 매년 2억원 7천만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3년 주기로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억 4천만원으로 추계

[표 3] 돌봄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돌봄 실태조사 실시 (안 제17조)	270	-	-	270	-	540	1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국가돌봄지표·지역돌봄지표 개발 및 국가돌봄지수·지역돌봄지수 조사·공표
(안 제18조)

- 제정안에 따라 돌봄청장이 국가돌봄지표와 지역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매년 국가돌봄지수·지역돌봄지수를 조사·공표하는 경우 개발 및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평등지표 개발 및 관련 지수 조사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을 위해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2,960만원 소요)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매년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하고 있음
 -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최신 조사는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연구용역(약 2,680만원 소요) 결과이며, 지역성평등지수에 관한 최신 조사는 “2024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연구용역(약 3,580만원 소요)임

- 본 추계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유사 연구용역 사례의 소요재정을 참고하여 제정안 시행 첫 해에 국가돌봄지표·지역돌봄지표를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3천만원 소요 가정), 차년도부터 국가돌봄지수·지역돌봄지수를 조사·공표하는 연구용역을 별도로 시행(각각 3천만원과 4천만원 소요 가정)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돌봄 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지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3억 1천만원으로 추계

[표 4] 돌봄지표 개발 및 지수 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돌봄지표 개발 및 지수 조사 실시(안 제18조)	30	70	70	70	70	310	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돌봄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운영(안 제19조·제21조)

□ 제정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돌봄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회의수당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고, 돌봄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는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유사사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해당 위원회 사무기구 운영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23조의2는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규정
 - 2024년 말 기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총 2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4년 대면회의 8회, 서면회의 4회 등 총 12회의 회의(본회의·분과회의)를 개최
 - 위원회 사무기구의 인건비·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집행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²⁾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무처 운영비³⁾에는 29억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예산은 매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되다가 2025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제1회 추경을 통해 편성됨

[표 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운영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주요 내용	비용추계 시 반영 여부
합 계	2,905		
기타직보수	800	부위원장·상임위원·전문임기제 봉급, 수당 등	부위원장 봉급, 수당 제외
상용임금	158	공무직 봉급, 수당 등	
일반수용비	362	위원회 회의 수당 등	단가 유지 가정
공공요금및제세	2	통신·우편요금 등	
특근매식비	5	특근매식비	단가 유지 가정
임차료	57	회의장 및 기타 임차료	임차료 제외
유류비	4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30	사무·전산기기 및 네트워크 등 유지보수	
복리후생비	8	전문임기제, 상용직 복리후생비	단가 유지 가정
기타운영비	8	비서실 및 과 운영비	단가 유지 가정
국내여비	29	국내 출장비	단가 유지 가정
국외여비	29	국외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출장비	단가 유지 가정
사업추진비	28	위원회 회의 및 업무협의 추진비 ¹⁾	단가 유지 가정
관서업무추진비	41	대내외 업무협의 및 직원 워크숍 등	단가 유지 가정
직책수행경비	59	부위원장,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과장급 등 직책수행경비	부위원장 직책수행경비 제외, 단가 유지 가정
일반연구비	610	정책연구비	단가 유지 가정
민간위탁사업비	600	인구정책 평가 및 심층평가 등 위탁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제외
고용부담금	34	상임위원, 전문임기제,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부위원장 4대 보험 부담금 제외
자산취득비	42	보안SW·전산SW 라이선스 구입 등	

주: 1) 사업추진비가 안 제19조의 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내역이며, 나머지가 안 제21조의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운영과 관련된 내역임

자료: 보건복지부

- 본 추계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운영비의 2025년도 예산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추계기간 인건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균 공무원임금 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변동하고, 수당 단가는 유지되며, 단가 유지를 가정하지 않은 운영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⁴⁾하여 추계

- 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부위원장을 상임으로 두고 있으며, 회의장 마련 등을 위한 임차료를 지출하고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가정하고, 별도의 임차료와 민간위탁사업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사업의 또 다른 내역사업에는 ‘정책소통 및 기본계획 홍보’ 사업이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사무처 운영비 예산만 고려함

4) 국회예산정책처 거시변수 전망치(2025.9.30. 경제전망 기준)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운영비는 2025년 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이 편성되어 인건비와 공공요금의 경우 8개월분의 예산만 반영⁵⁾되어 있으므로, 이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

□ 추계결과, 돌봄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의 사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31억 4,600만원으로 추계

[표 7] 돌봄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돌봄위원회 및 사무기구 설치·운영(안 제19조·제21조)	2,622	2,626	2,629	2,633	2,636	13,146	2,62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돌봄의 날 지정 및 행사 실시(안 제30조)

- 제정안에 따라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는 경우, 국가 등의 행사 개최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의날 행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행사비 단가를 참고하여 추계
 -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날로, 보건복지부는 관련 행사를 수행하고 있음
 - 2025년 예산서상 사회복지의날 행사 추진비는 2,400만원이며,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도 동일 예산액이 반영되어 있음
 - 본 추계서는 사회복지의날 행사비를 참고하여, 매년 돌봄의 날 행사에 2,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홍보·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5) 보건복지부는 사무처 예산이 편성되기 전 4개월은 예비비로 지출

- 추계결과, 돌봄의 날을 정하여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2천만원(연평균 2,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돌봄의 날 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돌봄의 날(안 제30조)	24	24	24	24	24	120	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